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연구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산하 연구회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학회의 산하 기관으로 모든 책임과 감사의 권한은 학회가 갖는다.

제 2 조 (직능)

연구회는 디스플레이의 세부 분야별로 연구 및 워크샵, 교육 등의 관련 활동을 하며,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직)

- ① 학회는 AMD, LC, OLED 및 Flexible Display, Field Emission 영상, 재료·부품, 플라즈마 및 장비, 구동기술 및 시스템, 3D 및 AR/VR, 광원 및 Micro LED, 형광체, 화질, QD&PV 의 13개의 연구회를 둔다.
- ② 각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각 연구회는 회장 1명, 간사 약간 명, 해당 분야별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수 및 연구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업적, 학회참여도, 전문분야와 전국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연구회의 회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단, 연구회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 ⑤ 연구회의 회장, 간사, 위원은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

제 4 조 (위원장)

연구회 총괄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 1인이 맡으며, 연구회들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재정)

- ① 각 연구회는 개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연구회는 분기별로 학회에 수입과 지출의 재무내역을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 ② 학회는 매년 초에 각 연구회 별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는 연구회의 전년도 결산과 당해년도 예산이 끝난 후에만 가능하다.
- ③ 연구회별로 행사를 진행한 후 영수증 발행금액의 15%를 학회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연구회의 재정 관리 방안"에 정한다. KIDS 이외의 기관과 공동주최할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 ④ 행사의 결산 후 재무감사를 받을 시에 각 연구회의 결산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 ⑤ 교통비, 출장비 등의 업무용 비용 지출은 학회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재정 관리의 세부 내용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연구회 재정 관리 방안'에 정한다.
- ⑦ 연구회 행사의 등록비는 학회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비회원의 등록비는 회원 등록비 + 학회 입,연회비 + α 의 금액으로 한다.

제 6 조 (행사)

각 연구회의 행사시에 영수증과 계산서의 발행은 학회의 이름으로 한다.

제 7 조 (회장단 회의)

연구회 회장단 회의는 학회 회장 또는 연구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연구회의 회장이 참석하지 못 할 시에 간사가 대신 참석 할 수 있다. 중요사항은 재적회장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장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사업보고)

- ① 각 연구회는 매년 연말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② 정기적으로 사업 내용을 학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사항)

-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운영세칙에 준한다.

② 학회 감사는 연구회의 집행 내용을 감사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안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안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안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연구회의 재정 관리 방안

1. 각 연구회는 매년 12월까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이하 '학회'라 함.)에 소정 양식의 사업보고서(당해년도 사업결과 및 차년도 계획 포함)와 당해년도 영수증을 제출한다. 그 후 학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사업이사 각 6명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기준 :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을 7:3으로 반영함
 - 활동정도(15%) → 참석자 수
 - 파급효과(35%) → 회원모집 15%, JID 논문 수 10%, IMID 논문 수 10%
 - JID Citation(30%)
 - 예산운용(20%) → 학회 OH연구회 평가 시 5등급(S:400만원, A:300만원, B:200만, C:100만원, D:지급 보류) 중 결정하며, 지원금은 차년도 연구회 지원금의 총 예산범위 이내로 한다. 연구회 최종 평가결과는 차년도 3월의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단, 신규연구회는 3년 간 B등급으로 일괄 지원한다. 연구회 지원금은 평가 후 2주 이내에 각 연구회 통장에 적립한다.
2. 각 연구회는 워크샵 등 연구회 행사시 학회 명의의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계산서와 영수증 발행은 행사 개시 최소 2주전에 학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회의 워크샵은 연구회의 통장으로 등록비를 받아야 한다. 각 연구회는 학회 명의의 영수증이 발행되는 행사를 진행 후, 영수증 발행금액의 15%를 학회에 Overhead로 납부한다. 다만, Overhead 납부 이전의 정산 결과 순익이 Overhead 납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잔액을 전부 납부하며, 적자일 경우는 Overhead 납부를 면제한다. 연구회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학회가 주최, 주관, 후원으로 참여한 경우 Overhead의 비율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기타 연구회장이 특수한 사정을 들어 특별요청을 할 경우 Overhead 비율을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연구회 워크샵의 초청 강사 등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25만원 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소득세와 주민세로 차감 후 지급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주민세는 신고를 위하여 행사가 종료된 달 안에 학회로 송금해야 하며, 강사료 지급내역서도 세금 신고를 위해 그 달 안에 본회로 송부해야 한다. 강사료 지급내역서는 세금의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달 10일에 학회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행사가 발생한 달의 말까지 학회로 송부해야 한다.
4. 연구회가 행사 2주전에 카드결제기의 대여를 학회에 요청했을 때, 학회는 카드결제기를 연구회에 대여한다. 행사가 끝난 후 카드영수증은 1주일 내에 학회로 송부한다.
5. 각 연구회의 회의비등 모든 지출은 학회에서 연구회에 지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연구회 통장과 도장은 학회에서 관리한다.
6. 각 연구회는 수입과 지출 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매 분기별(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출액 내역서와 영수증을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단 강사료는 상기 3항에 따라 제출). 지출 금액이 2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7. 상기 6항과 별도로, 연구회가 학회 명의의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워크샵 등의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의 재정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학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규모 행사로 인해 정산 소요 시간이 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회와 협의하여 재정 결산 보고 시한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연구회의 교육 행사에 학회 직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회의 신청 후 총무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단, 사전 등록자 50명 이상의 행사인 경우만 직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 부 칙 -

1. 본 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안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안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안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안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안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안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안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안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안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안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안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안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